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1.

발 의 자 : 신영대 · 안호영 · 임오경
홍기원 · 이학영 · 박수현
박지원 · 김용만 · 권칠승
박희승 · 정태호 · 이연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식품위생법」은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저장·운반·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.

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.

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의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)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에 관한 인

정) ① 재생원료(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기준이 「식품위생법」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하고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

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,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4(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수입 금지) 누구든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3(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에 관한 인정) ① 재생원료(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기준이 「식품위생법」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 제4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	④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하고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u> ⑤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 ⑥ <u>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,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/u> 제10조의4(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수입 금지) 누구든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42조(벌칙) ----- -----
--	---

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1. ~ 3. (생략)</u>	----- ----- -----. <u>1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</u> <u>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</u>
---	---